

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생활관 규정

【 생활수칙 】

■ 귀관시간 - 오후 11:00 까지.

■ 점호

- 23:00 ~ 점호방송 종료 시까지

- "점호합니다." 방송이 나올 때 자신의 방에 있어야 하며, 방문을 열어놓아야 한다.

- 화장실 사용, 샤워, 운동 등의 활동은 점호 종료 방송이 끝난 후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본인의 관실 내부에 없는 경우도 부재로 간주한다.

- 반드시 "점호 마칩니다." 점호 종료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각자 방에 있어야 하며, 매일 주번이 확인한다.

- 지각 등의 사유로 점호 방송 종료 이후에 점호를 받기 위해서는 생활관 자치회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점호한다.

- 특정 사유(아르바이트와 취업 면전에 한함)로 부득이하게 점호 시간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유서를 생활관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아울러, 생활관 자치위원회는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15일 간격으로 확인(전화 통화)하여야 한다.

■ 주변

- 주변 활동 사항을 반드시 지킨다.

※ 자세한 주변 활동 사항은 <첨부1> 참고.

※ 첨부 1

- 주번은 방 번호 순서대로 매주 한 방씩 정하며, 일주일동안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.

- 주번은 생활관생 명단을 들고 각 방을 돌며 점호활동을 한다.

점호활동은 오후 11 시 정각에 시작하며, 점호활동 전·후에는 방송으로 안내를 한다. 아울러, 매일의 점호활동 결과를 생활관 자치위원회에 전달한다.

- 공공장소의 전기, 수도 상황 및 생활관 내 기물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자치회장에게 알린다.

- 주번은 주말에 한명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.

- 일요일에는 생활관 청소를 하고 점호 후에 미화부장에게 검사를 받는다.

· PC 실 청소 : 책상 위, 바닥을 청소한다.

· 안내실 청소 : 바닥을 청소하고 1 층 청소기 먼지통 및 필터를 청소한다.

· 전자레인지 청소 :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유리판을 씻고, 모든 면을 깨끗하게 닦는다.

장갑은 깨끗이 빨아 넣어둔다.

· 쓰레기통 청소 : 1 · 2 층 · 식당 쓰레기통을 모두 비운다. (분리배출)

· 세탁기의 먼지 주머니를 비우고, 재자리에 끼운다.

· 1 · 2 층 정수기의 물을 비운다.

· 식당의 식탁을 깨끗하게 닦는다.

- 일요일 점호 후, 다음 주번에게 인계해 준다.

- 매학기 첫 주번에게는 생활부장이 인계를 하도록 한다.

■ 관실 출입문 잠금장치

- 각 방의 비밀번호는 해당 호실의 관생만 공유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
- 응급상황 시, 출입문 개방을 위하여 각 방의 비밀번호 변경 시에는 (초기설정 포함) 변경 당일 오후 11:00 이전까지 생활조교에게 반드시 알린다.

■ 면회

- 면회 시간 (08:00 ~ 22:30)

- 생활관생과 비관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외부인으로 간주하고,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.

- 단, 특이사항의 경우 생활관 자치위원회 승인 후에 방에 출입이 가능하다.

- 비관생의 경우, 1층 경고선(안내실과 사감보실 사이의 경고선, 1층 식당 앞의 계단의 경고선, 1층 남·여 샤워장)을 넘는 출입을 금한다.

■ 프린트 · 복사기 · 세탁기 사용

- 프린트와 복사기에 이면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- 세탁기는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시간과 호실을 적고 사용하도록 한다.
(단, 02:00 ~ 06:00에는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.)

- 남자 관생의 경우 1층 남자 화장실의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오전 02:00 ~ 오전 06:00에는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.

■ 세면 · 샤워장 사용

- 점호 후 부터 다음날 오전 05:00 시까지 1층은 세면대만 사용 가능하다.

(1층 오후 11:00 ~ 오전 05:00 샤워장 사용금지.)

- 점호 후 부터 다음날 오전 05:00 시까지 2층은 샤워장만 사용 가능하다.

(2층 오후 11:00 ~ 오전 05:00 세면대 사용금지.)

■ 화장실 사용

- 점호 방송 종료 후부터 다음날 오전 05:00 시까지 2층은 화장실의 왼쪽만 사용할 수 있다.

(2층 오후 11:00 ~ 오전 05:00 화장실 오른쪽 사용금지.)

■ 기타 관내 생활

- 항상 생활관 내에서는 조용히 한다.

- 생활관 공공기물 사용 시에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전기 및 수도 기타 공공물품은 최대한 아껴 쓰며 화재나 도난 예방에 주의한다.

- 생활관 내 집회 및 게시물은 사전에 생활관 자치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- 공공장소를 이용한 후에는 전등을 꼭 끄도록 한다.

- 방 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기구 : 스탠드, 컴퓨터, 휴대폰 충전기, 라디오, 선풍기

- 일체의 전열기 (드라이기, 고데기, 다리미, 토스트기, 커피포트, 전기장판, 전기난로 등) 사용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1층 안내실과 2층 회의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. 단, 1층 안내실은 일부 시간(07:00-07:30 / 13:00-13:30 / 15:20-15:40 / 21:30-22:00)의 사용은 금지한다. 아울러, 사용금지 시간을 어길 시에는 벌점(10점)을 부여한다.

- 공공장소의 LAN선이나 콘센트를 끌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■ 외박 및 장기 외박

- 외박은 수업 및 실습이 없을 시, 주중+주말 포함하여 3일까지 가능하며, 외박계는 점호 전 까지 기재하여야한다.

- 단, 주중 외박날짜가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(예, 화, 수, 목)나 주말 외박을 포함하여 4일 이상 연속 외박을 하는 (예, 금, 토, 일, 월) 장기외박 의 경우에는 생활관 자치위원회와 생활조교에게 미리 알려 승인을 받아야한다. 그리고, 외박 후 귀관 시에는 외박 확인서를 귀관일로부터 3일 안에 생활관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<첨부2> 참고.

※ 첨부 2

- 장기외박 해당 사유

: 주중 외박날짜가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(예, 화, 수, 목)나 주말(토, 일 포함) 외박을 포함하여 4일 이상 연속 외박을 하는 (예, 금, 토, 일, 월) 장기외박의 경우에는 생활관 자치위원회와 생활조교에게 미리 알려 승인을 받아야한다.

그리고, 외박 후 귀관 시에는 외박 확인서를 귀관일로부터 3일 안에 생활관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장기외박 절차

① 장기외박 신청은 외박을 시작하는 날의 4일 전 23:00까지 생활조교에게 서류로 신청한다.

(예. 8월 5일 부터 장기외박을 원하는 경우, 8월 1일 23:00 까지 제출)

※ 신청서는 불임의 서식을 이용한다.

※ 장기외박 승인을 받지 않고,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고 벌점표의 기준을 적용한다. 아울러, 무단외박의 사실을 보호자(학부모님)에게 통보한다.

※ 장기외박 승인 없이 외박하는 행위 - 벌점 30 점, 벌금 8,000 원)

② 장기외박 승인 유무를 확인하고 외박한다.

③ 외박 후 귀관 시에는 외박 확인서를 귀관일로부터 3일 안에 생활관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외박 확인서를 귀관일로부터 3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: 벌점 10 점, 벌금 2,000 원

※ 외박 확인서 : 별도 첨부와 같음

■ 입퇴관 관련

- 생활관에서의 태도(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위생상태 불량, 정리 정돈 불량, 소음피해 등)에 대해 민원이 생활관 자치위원회에 접수 되는 경우, 아래의 불이익이 주어진다.

1. 한 번의 민원 접수 : 생활관 자치위원회의 경고 및 생활조교 면담, 벌점 50점

2. 두 번의 민원 접수 : 생활관 지도교수 면담

3. 세 번 이상의 민원 접수 : 퇴사 조치

- 다음 학기 입사 불가, 입사 전 취소자가 발생해도 입사 불가, 생활관비 환불 불가

- 단, 보복성 건의일 경우, 건의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.

(보복성 여부는 다른 사생들의 건의정도와 CCTV 분석을 통해 생활조교와 생활관 지도교수가 판단)

■ 퇴관관련

- 퇴관 직전에 생활관 자치위원회와 함께 작성하고 서류내용을 확인한 뒤, 자치회 승인 후에 퇴관하도록 한다.

- 자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 퇴관하는 학생에게는 생활관 우선 선발 제외 및 입관시 벌점 30점을 처분한다.

※ 시설확인서 서류 내용 상, 기물이 파손된 것에 대한 금전적·물리적 보상 이후에 퇴관 가능

- 퇴관은 공고된 일정 안에 반드시 해야한다.

- 퇴관 시에는 본인이 사용한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본인 소유의 물품들을 모두 가져간다.

※ 옷장, 독서실 등 장소에 보관 불가. 남겨진 물품은 입관 신청서에 명시된데로 생활관 자치위원회 및 생활조교가 동의서에 의거하여 폐기 처분한다.

- 퇴관 후, 다음 학기 개관전까지는 생활관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.

※ 시설확인서 : 별도 첨부와 같음